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2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제11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12월 15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원미구보건소장 정영구)

□ 제안이유

○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 의 일환으로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 및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기준을 정하고,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 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○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, 참 전유공자,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관내의 보건소를 이용시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.(안 제8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1 1 1 0	-1 -1 D A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까지 포함되는지?	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정하는 가족
	에 해당됩니다.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 복	○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보건의
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	료혜택을 보고 있으며, 장기복무 제대군인
감면 혜택 대상자중 연금수혜자도 있는	을 넣은 것은 국가보훈처 요구가 있어서
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?	입니다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 - 없 음
- 나. 반대토론
 - 없 음
- 5. 심사결과
 - 수정의결
- 6. 소수의견 요지
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 음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	안	관련 제332호
번	ই	[산년 세552호
의	결	2004. 12. 23
연석	일일	(제116회)

제안년월일 : 2004년 12월 15일

제 안 자: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, 5.18민주유 공자와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, 참전유공자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본인부담금만 면제하는 것으 로 하고

○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인연금대상자로 보건소에 서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를 받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므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.

2. 주요골자

○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에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외(안 제8조제1항제9호)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제9호중 "참전유공자,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 인 등의 생활을 위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"을 "참전유공자 등의 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.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."로 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진</u> 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	제8조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) ①진 진 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.	제8조(개정안과 같음) ① (개정안과 같음)
 1.~5. (생 략) 6.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자의 진료비. 다만, 국민건강 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 한다. 	1.~5. (현행과 같음) 6 <u>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</u>	1.~5. (개정안과 같음) 6. (개정안과 같음)
7.~8. (생 략)	7.~8. (현행과 같음)	7.~8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, 참전유공자,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	환자, 참전유공자 <u>등의</u>
<u>9.</u> (생 략)	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	<u>10.</u> (개정안과 같음)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	제332호	
번 호		
의결	2004.12.23	
년월일	(제116회)	

제출년월일 : 2004. 12. 8.

제 출 자: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○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 의 일환으로 보건소이용시 진료비용 및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기 준을 정하고,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○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민주유 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 자, 참전유공자,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관내의 보건소 를 이용시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(안 제8조제1항)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"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"을 "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등)"으로 하고, 동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"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"를 "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한다"로 하며, 동항제6호중 "진료비"를 "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"로 하고, 동조 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며,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9.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민주유공 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, 참 전유공자 등의 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.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.
-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 <u>(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)</u> ①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진료</u> 비를 면제할 수 있다.	
 1.~5. (생 략) 6.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이상인 자의 진료비.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. 	<u>수수료 및 진료비</u>
7.~8. (생략)	7.~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9.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,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, 5·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,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, 참전유공자 등의 건강진단수수료 및 진료비.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비용에 한한다.
<u>9.</u> (생 략)	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

행 현

개 정 안

②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②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 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 험 등을 의뢰 할 경우와 기타 를 제시하여야 한다.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 다.

- 1.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
- 2.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<u>경</u>우
- 4.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
- 5.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 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건강 진단수수료
- 6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 할 때

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